

의안번호	2203281
의 퇴 인	이병진의원
회 답 일	2024. 8. 29.
추계번호	24C2531

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61조의2(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의 제공 활성화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료이용 문화시설 또는 프로그램(이하 “무료이용 문화시설 등”이라 함)을 적극 제공하여야 하고,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에게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의 제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의무규정 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61조의2(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의 제공 활성화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의 제공 활성화(안 제61조의2)

- 현행법은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이 그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¹⁾

1)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32조(청소년이용시설)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.
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 - 개정안은 청소년이용시설 중 여가를 활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을 적극 제공하고(안 제61조의2제1항),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에게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을 제공하는 경우 경비 지원(안 제61조의2제2항)을 하려는 것임
 - 안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무료이용 문화시설등을 제공하는 데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관련시설을 제공하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증가하여 이에 따르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, 현시점에서는 그 증가 수준을 예측하기 어렵고, 지원대상 및 규모 또한 불확실하여 그 소요 정도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곤란함
-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